

2023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 공고

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 공단은 다음과 같이
2023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.

1. 대상 주차장 : 마포구 관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인 시설공영주차장(성산2-1, 망원-1, 망원2-1, 한서 공덕-1, 공덕-2, 망원나들목 B동 공영주차장)
2. 신청 대상 : 마포구 관내 거주자·사업자(재직자 포함)의 자동차 소유자 등
※ '거주자'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.
※ 주정차 위반 과태료(3회 이상)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, 주차장 불법 개조자(체납 등의 기준일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함)는 우선 배정 제외,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(미이행)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.

3. 배정 일정

이용 신청기간	배정 발표일시	주차료 납부기간	주차장 이용기간
2023. 8. 4. ~ 8. 14. (11일간)	2023. 8. 31.(목) 14:00 이후 (홈페이지 확인)	2023. 8. 31. ~ 2023. 9. 11. (카드결제, 가상계좌)	2023. 10. 1.~2024. 3. 31. (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)

※ 배정자는 안내문자 외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.

※ 납부기간내에 미납시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고 배정 취소됨.

4. 배정기준 및 조건 : 따로붙임 1 '배정 기준 및 조건' 참조

5. 신청방법 : 공단방문(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:12:00~13:00)), 또는 팩스(☎02-376-4068)로 신청하거나, 인터넷(<http://eparking.mfmc.or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
※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즉시 조회 반영
※ 점심시간 상담 및 신청 불가

6. 서류제출방법(각 1부)

가. 방문 또는 팩스(이메일) 제출 시(기존 제출 방법)

-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(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④상이국가유공자, 장애인, 저공해 자동차, 다둥이카드(막내자녀 만 13세 이하) 소지자 등 : 관련 증빙 자료(신청서 참조)

※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(재직자)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재직자는 재직증명서)

나.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(신규 제출 방법)

- ①주민등록표 초본(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②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(재직자)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재직자는 재직증명서)

※ 신청서 및 기타 가점관련 항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내역 자동 등록됨(제출 불필요)

※ 배정자 및 대기자 중 신청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(증빙서류 첨부)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여야함, 미 제출시 배정취소 및 배정제외 사유에 해당이 됨.

※ 공단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 시 미 제출시에도 배정 취소 및 배정제외 사유에 해당이 됨.

7.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(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)

구분		전일(24시간)	주간(09:00~18:00)	야간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정액)	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	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	시설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

8. 그밖에 신청 방법, 서류제출방법, 배정기준, 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eparking.mfmc.or.kr>)를 참조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(☎ 02-300-5042~5045/운영시간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12:00~13:00)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3. 8. 2.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

1. 배정 기준

- 가. 배정방법 : 신청 자동차(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) 및 거주 정보(주민등록 기준)를 기초로 아래 '배정표'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
- 나. 배정대상 :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배정
- ※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수시 배정
- 다. 배정 우선순위(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)
- 1순위 : 배정(신청)일 현재 신청 동(洞) 내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상이 국가 유공자,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
 - 2순위 :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(이하 '관내')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
 - 3순위 :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·재직자) 중 고득점 순
- ※ 동점 시 우선순위 : ① 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② 자동차 배타량이 적은 자동차
 - ※ 동점 시 우선순위 : ① 관내 사업(개업)일(재직)은 그 사업장 재직(근로)일이 이른 자 ② 자동차 배타량이 적은 자동차

<표 1> 배점표

항목											점수	확인방법	
거주자	① 거주자 거주기간(관내 최초 전입일 기준) 점수										30 이하	주민등록표 초본 (관내 최종 전입일)	
	거주 기간	1년 미만	1년 ~2년 미만	2년 ~3년 미만	3년 ~4년 미만	4년 ~5년 미만	5년 ~10년 미만	10년 ~15년 미만	15년 ~20년 미만	20년 이상			
	점수	3	5	7	10	13	15	20	25	30			
	② 거리 점수(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								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	
	거리	10m 미만	10m ~30m 미만	30m ~50m 미만	50m 이상								
점수	15	10	7	3									
차종별 (공통)	① 경차(배기량 1000cc 미만)										5	자동차 등록증	
	② 소형차(배기량 1000cc 이상 ~ 1600cc 미만)										2		
	① 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마포구관내 거주자)										10	복지카드/유공자증/장애인주차표지(일부) 등 입증 자료	
	② 고엽제 유류의종 환자(고도장애 및 중도장애) 자동차(마포구관내 거주자)												
	특별 가점 (공통)	③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(중도장애)의 자동차(마포구관내 거주자)										5	
*단 복지카드와 장애인주차표지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의 등급을 우선 함													
우대 가점 (공통)	친환경 자동차 (최대 5점)	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1등급 자동차 (환경부 친환경 등급 조화내역 제출)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자정에 등록 자동차(등록증상 “자정에”, “하이브리드” 표시) 친환경 1등급 차량의 경우 자정에 등록 자동차 3점 중복점수 미인정									5	환경부 조화내역 제출	
		【 다둥이 행복카드 】 소지자 자동차 (막내 나이 18세 이하 한정)									3	자동차 등록증	
		2자녀									3	주민등록표 등본	
		3자녀 이상									5	다둥이카드	
		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(단,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)									5	자동차 등록증	
	공유사업 참여/ 신청기간 4개월 (이용기간 사실입 ~ 정기배정 전월까지)	① 전입 배정자 기준										5 이하	모두의 주차장 확인
		공유 시간	50시간 미만	50시간 이상	250시간 이상	400시간 이상							
		점수	0	1	3	5							
		② 주·야간 배정자 기준											
		공유 시간	25시간 미만	25시간 이상	125시간 이상	200시간 이상							
점수	0	1	3	5									
장기 대차	대기 기간	1회 (6개월)	2회 (1년)	3회 (1년6개월)	4회 (2년)	4회 이상 (2년이상)							
	점수	1	2	3	4	5							
비 거주자	① 관내 사업 기간(재직자는 재직기간) 점수										30 이하	사업등록증 등/ 재직증명서	
	거주 기간	1년 미만	1년 ~2년 미만	2년 ~3년 미만	3년 ~4년 미만	4년 ~5년 미만	5년 ~10년 미만	10년 ~15년 미만	15년 ~20년 미만	20년 이상			
	점수	3	5	7	10	13	15	20	25	30			
	* 사업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(재직자는 해당 업종 재직 시작일)을 기준으로 하며 관내 사업 개시일 이전 입사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부터 기간을 기산함.									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	
	② 거리 점수(사업장 소재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											
거리	10m 미만	10m ~30m 미만	30m ~50m 미만	50m 이상									
점수	15	10	7	3									

※ 비고

- 장애인 특별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물론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(단, 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복 부여하지 않음)
-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으로 함
-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
- 공유점수는 차량번호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전 적용된 점수는 정기 배정 점수 기간에 합산 요건을 해야하며, 합산 요건 없을 경우 변경된 차량의 공유시간만 산정하여 점수 부여함
- 시설주차장은 공유점수 산정에서 제외함

2. 우선배정 제외 대상

- 가. 관련 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
- 나. 동일 주소지(신청인)의 자동차를 2개 구획(전용구획 포함) 이상에 중복 배정하지 않음
- ※ 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공단이 배정 취소 등 임의 처리하며 동일 주소지(신청인)로 2차량 이상 신청하면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우선배정에서 제외함
- 다.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자동차
- 라.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
- 마. 기타 관련 법령(조례 및 방칙 포함) 등에서 정하는 경우

- 바. 우선배정 제외 대상자라도 배정 후 여유분 발생 시 '가'와 '나' 목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(단, 민원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)
- 사.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인 경우(배정제외)

3. 배정(지정) 원칙

- 가.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(구간 공동 이용제)로 배정하며 이용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.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.
- * 단, 분납 신청 시 3개월 단위 분납만 가능
- 나.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(또는 대기자)에게 배정함.
- ※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.
- 다.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(부부포함)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.(단,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)
- 라. 거주자가 리스차량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자동차(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)로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.
- *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는 재직증명서 외에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함
- 마.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(개인택시, 2.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)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.
- 바.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하거나 취소함.(단, 타구간 여유분 발생으로 수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)
- ① 해당 구간 배정일이 늦은 자 ②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
- 사.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해야 함.
- 아.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.
- * 환불 후 재배정 불가(대기 신청 원칙)
- 자.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차. 배정 후 차량 변경 시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,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배정일로부터 10일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[단, 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(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 10일)까지 이용가능]
- 카. 배정은 1구구 1차량(1대) 배정을 원칙으로 함.
- 타.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을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건을 적용함(예 : 7월 9일이 시행일이면, 7월 8일 할인비용/7월 9일 할인 미적용)
- 파.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역의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주차장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,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인 "모두의 주차장"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4. 배정 취소 요건(우리공단 직권 취소 또는 영구 제외)

- 가.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
- 나.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
- 다. 신청서 허위(착오) 기재,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※ 이 경우 배정 전·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.
- 라.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
- 마.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5.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(유의 사항)

- 가. 주차권 미부착 시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(견인) 대상이 될 수 있음.
- 나.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.
- 다. 해당한 배정 차량, 이용기간,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(견인) 대상이 됨.
- 라.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, 미확인(또는 누락)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(이용자)의 책임임.
- 마.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.
- 바.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- 사.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.
- 아. 그 밖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.

6. 주차요금 기준(월정)

구분	전 일 (24시간)	주 간 (09시~18시)	야 간 (19시~익일08시)	비 고
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시설주차장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

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

(☎ 02-300-5042~5045, FAX: 02-376-4068)